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2. 13.

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11월 9일

나. 발 의 자: 양송이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1월 14일

라. 상정일자: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3. 11. 27.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양송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모바일 기기의 보급과 확산, 탈중앙화된 정보네트워크,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결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노동플랫폼 성장에 기여했고, 코로나19 팬데믹은 플랫폼노동의 전 세계적 증가를 촉진함. 현재 많은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고 있어 높은 사고율, 소득 불안정성, 장시간 노동과 같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, 노동법과 노사관계법 등 집단적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등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. 이에 관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, 용어 정의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등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위원회 설치 및 기능, 구성 및 임기, 위원장의 직무,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1조)
- 법률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~제13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제정조례안은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관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,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2조(정의)에서 “플랫폼 노동자”를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91조의15(노무제공자 등의 정의)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플랫폼 종사자”의 정의에 따라 플랫폼 노동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아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함.
  - 안 제3조(적용대상)는 영등포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두거나 노동을 하는 경우로 적용대상을 규정하여, 영등포 구민 또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제공 장소가 영등포구인 경우에도 본 조례안의 적용을 받도록 함.
  - 안 제6조(기본계획 등 수립)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실태조사,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 안 제7조(지원 사업 등)는 플랫폼 노동자의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·조사 및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.
  -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, 안 제12조(법률지원 등)는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, 노무

상담 및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.

#### ○ 검토 결과

-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‘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’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는 약 80만명으로 취업자(15세~69세)의 3%에 해당하며 2021년의 약 66만명 대비 20%가 증가하였으며, 직종별로는 배달·배송·운전 직종의 규모가 가장 컸으며, 가사·청소·돌봄 및 미술 등의 창작활동 직종 등에서 종사자가 크게 증가(89%)한 것으로 나타남.
- 플랫폼업체 이용 시 작성한 계약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‘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’는 비율이 남자는 41.7%, 여자는 57.4%로 가장 높았음.
-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한 노무서비스 제공 시 하나의 독립된 ‘사업자’로 간주되어 이용자와의 분쟁, 근무 중 발생하는 사고 등 모든 위험을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, 최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 대상 사회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플랫폼 종사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같은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고 있음.
-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「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」이 2021년에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, 서울시 내 자치구들도 관련 조례의 제·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추세임.
- 본 조례안은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등을 개선하고자 제정된 안건으로,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의 권익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조례안의 적용대상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분류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,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함에 앞서 면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

(양송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11. .

발 의 자: 양송이, 김지연, 임현호  
이규선, 유승용 의원  
(5인)

## 1. 제안이유

모바일 기기의 보급과 확산, 탈중앙화된 정보네트워크,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결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노동플랫폼 성장에 기여했고, 코로나19 팬데믹은 플랫폼노동의 전 세계적 증가를 촉진함. 현재 많은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고 있어 높은 사고율, 소득 불안정성, 장시간 노동과 같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, 노동법과 노사관계법 등 집단적 권리로 부터 배제되는 등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. 이에 관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, 용어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

(안 제1조~제3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다.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등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라.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마. 위원회 설치 및 기능, 구성 및 임기, 위원장의 직무,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1조)
- 바. 법률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~제13조)

### 3. 제정안: “별첨”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근로기준법」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- 다. 입법예고(2023. 11. 09.~ 11. 14.)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근로기준법」 등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플랫폼 노동”이란 온라인 플랫폼(웹/앱)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.
2. “플랫폼 노동자”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노동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-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영등포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경우
- ② 영등포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거나 노동을 하는 경우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플랫폼 노동자가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,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6조(기본계획 등 수립)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
2.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
3.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방안
4.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
5.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·홍보
6.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 사업 등)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·조사
2.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3. 저소득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
4.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 장구 지원
5.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심의한다.

1. 플랫폼 노동자 노동 환경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2.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9조(위원회 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,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

며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.

1.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
2.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
3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
4. 노동분야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.

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법률지원 등)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,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13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